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
변화하는 남구,
세계가 찾는 도시

부산남구공보



제 1273호 2024.1.16.(화)

······					
선	기	관	의	장	
신라					

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

발행·편집 /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(48452)

☎ 607-4068 / FAX 607-4919

고	시
---	---

▶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-86호[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공				
람				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
부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4-86호

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6일

부산광역시 남구청장

1. 자치법규명

○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등의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의 조례위임 근거조항 현행화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 구성기준 변경사항 반영(안 제2조)
- 다. 위원회 간사와 서기 변경사항 반영(안 제3조제2항)
- 라.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지명 폐지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4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.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
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(참조: 토지정보과)에게 서면(우편, 팩스 또는 전자우편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의견과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 사항 등

※ 보내실 곳

○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(대연동)

부산광역시 남구청장(참조: 토지정보과)

○ 전화번호 : 051) 607-4742 (Fax. 607-4759)

붙임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
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88조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"로 한다.
제2조제1항 중 "7명"을 "10명"으로, "구성한다"를 "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
내로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부구청장"을 "소관업무 부서장"으로 한다.
제3조제2항 중 "부서장"을 "담당팀장"으로, "담당팀장"을 "담당 주무관"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"변경 또는 조정"을 "변경 및 폐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변화하는 남구, 세계가 찾는 도시

신ㆍ구조문대비표				
현 행	개 정 안		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공간정보의	제1조(목적)			
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9				
1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88조</u> 에	<u>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</u>			
따라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의				
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				
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		
제2조(구성) ① 부산광역시남구지명	제2조(구성) ①			
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				
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	<u>10명</u>			
포함한 <u>7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</u>	<u>구성하되, 민간위원은</u>			
<u>한다</u> .	<u>6명 이내로 한다</u> .			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	②			
장은 <u>부구청장</u> 이 된다.	<u>소관업무 부서장</u>			
	 .	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	
제3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 략)	제3조(간사 및 서기) ① (현행과 같			
	<u>ㅇ</u>)			
② 간사는 소관업무 <u>부서장</u> 이 되	② <u>담당팀장</u>			
고, 서기는 소관업무 <u>담당팀장</u> 이	달당 주무관			
된다.				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	제4조(기능)			
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				
1. 지명의 제정, <u>변경 또는 조정</u>	1 <u>변경 및 폐지</u>			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			